

##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(변경)고시

『유통산업발전법』 제13조의3 및 『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1. 10. 04.

영 동 군



### 1. 지정 목적

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.

### 2.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내용

- 위 치 : 영동전통시장
- 범 위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까지
- 면 적 : 5,235,200m<sup>2</sup>
  - ※ CAD 구적상 면적이며, 시장면적 제외
- 관련근거 : 『유통산업발전법』 제13조의3 및 『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』 제11조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

시 장 명	시 장 구 역	시장면적 (m <sup>2</sup> )	지정면적 (m <sup>2</sup> )
영동전통시장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3-13번지 일원	92,000	5,235,200

3. 고시방법 : 영동군 홈페이지([www.yd21.go.kr](http://www.yd21.go.kr)) 및 읍·면 게시판

4.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도서 열람 방법

- 방문열람

【 영동군청 투자유치과 영동읍 동정로 1 (계산리210-1) ☎ 740-3712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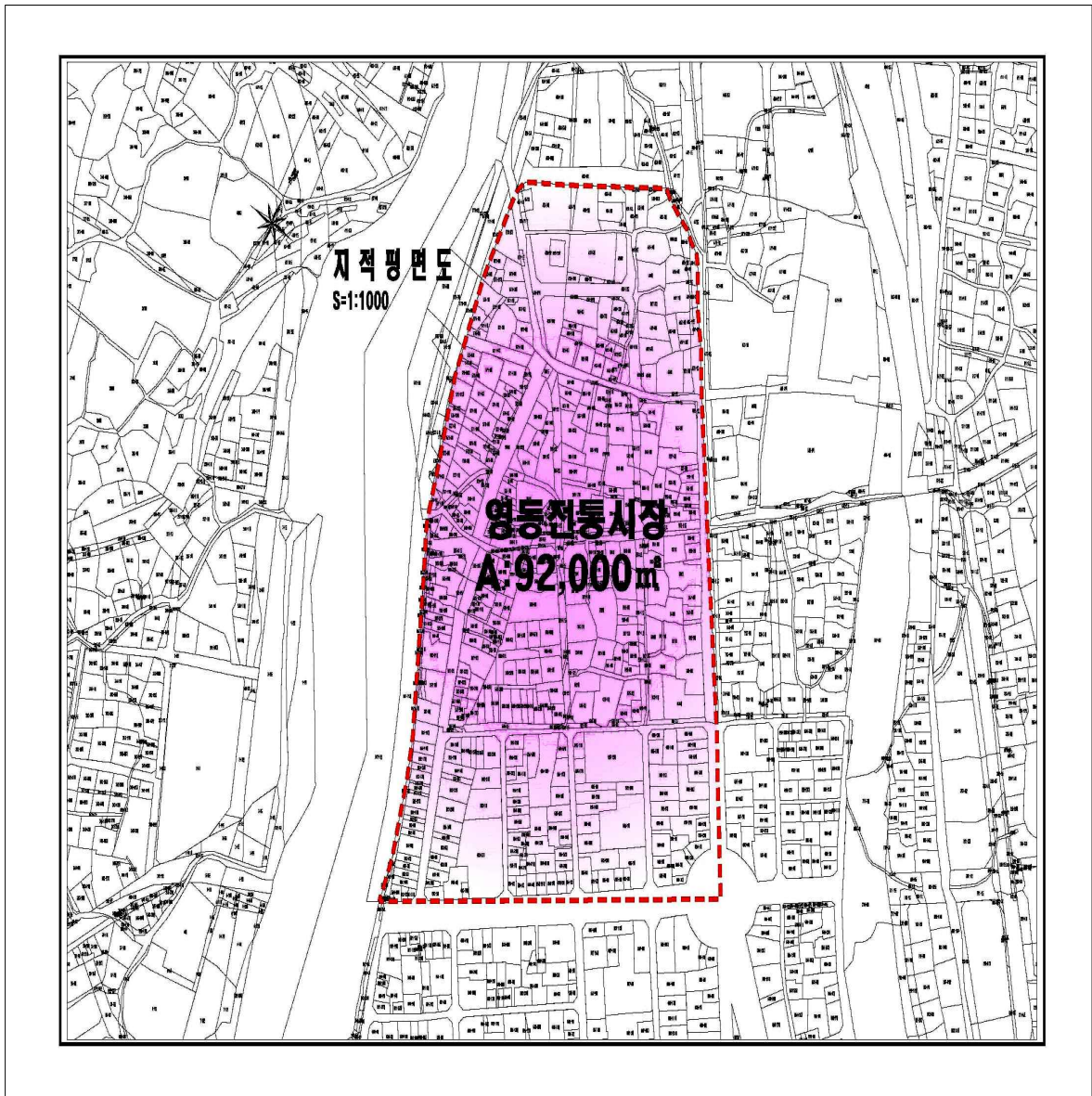
5. 시행일 및 유효기간

- 시행일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유효기간 : 「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에 따른다.

첨 부 :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도 1부. 끝.

#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도



- 시장명 : 영동전통시장 (인정시장)
- 등록일자 : 2005. 06. 22.
- 위치 :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3-13번지 일원
- 전통상업보존구역 : 영동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
- 전통시장 위치도



※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

#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위치도

대상시장	영동전통시장	소재지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3-13
지정기준	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		

범례	
전통시장 경계선	
전통상업 보존구역 경계	



지적평면도  
S=1:5000

